

기본 거래 계약서

본 계약은 한국베링거인켈하임주 (이하 갑 이라 한다)과 거래를 수행하는 공급처(이하 을 이라 한다) 간의 합의서이다.

제1조 기본 원칙

갑과 을은 본 기본거래계약(이하 “본 계약”)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 (Scope of Work, Payment Schedule, 기타 추가합의서)을 성실히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기본계약 이행에 있어서 모든 관련 법령, 감독기관의 지시 및 BI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위탁

1. 을은 갑과 계약한 서비스의 내용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단, 그 일부에 대하여는 을은 갑의 사전 승인 하에 본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을은 가급적 입찰을 통해서 제3자를 선택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사안 별로 당사자간 특별 합의에 따라, 을은 을의 명의로 계산으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을은 고용한 제3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BI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계약상 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3.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및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이행을 위와 관련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요구된다. 여행 경비는 갑의 여행 경비 지침서 또는 상호 합의된 내용을 따르거나 세무서에서 인정한 고정 비용에 의해서 상환될 수 있다.

제3조 개별계약에의 적용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4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대금의 결정

1. 대금을 정함에 있어 내용, 물량, 인건비, 물가변동상황, 관리비, 적정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은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변동될 수

있다. 단,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 PO(Purchase Order)를 발행하고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1. 을이 계약상 서비스를 완료하고 이에 대하여 갑이 승인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서비스가 완료된 월의 25일 이전까지로 하고 대금 지급의 기한 및 방법은 별도 합의된 바에 따른다. 다만, 25일 이후에 서비스가 완료된 경우에는 익월 25일 이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갑과 을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별도 합의하에 사전 비용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해 보호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제7조 보고의 의무

1. 을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갑에게 계약 내용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갑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2. 본 계약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회의에 대하여,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갑에게 1주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갑은 회의록을 검토하고 2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을에게 알려 이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호 간에 이의 없음이 확정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1. 이상사례의 정의(Adverse Event). 이상사례란 의약품이 투여된 환자/임상연구 대상자에게 발생한 의도되지 않은 의학적 사건으로, 치료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2. 이상사례 보고. 갑이 국제적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을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 시,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① 모든 이상사례
- ② 임신 중 약물 노출
- ③ 임신 중, 임신 후에 보고된 이상사례 / 부모로부터 아기가 약물에 노출된 경우 / 수유를 통한 약물 노출 또는 직업적 약물노출
- ④ 보고된 모든 약물효과 미비, 과량투약, 남용 및 오용, 약물간 상호작용, 약물과 식품간 상호작용, 약물을 통해 감염원으로부터 의심되는 전염,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
- ⑤ 이상사례와 관련된 제품 품질 결함과 위조품
- ⑥ 갑의 물질 / 제품을 복용 후 이상사례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갑의 제품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제품위조 등)

을은 위에 나열한 ①-⑥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 / 인지한 경우 어떠한 선별, 선정 그리고 임의적인 추가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보를 접수한 일자와 함께 아래 갑의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화 : 02-709-0171

팩스 : 02-2259-4288

이메일 : PV_local_korea@boehringer-ingelheim.com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이상사례 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 계약의 수행을 담당하는 을의 임직원들이 위 이상사례 보고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을은 해당 임직원들을 교육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제품 문의

1. “제품 문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공급자, 의료 기관, 정부 또는 규제 당국, 환자 또는 특정 의약품 및 관련 표시 (들)에 관한 제 3 자에 의한 모든 정보에 대한 요청을 의미한다.
2. 을은 접수 후 1 영업일 내의 모든 제품 문의를 갑에게 전달해야 한다. 을은 보고된 제품 문의는 어떠한 수정, 변별(분별), 선정, 또는 절차를 하지 않고 보고 받은 그대로 BI 의료정보(MI)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고받은 날짜와 함께 전달한다.
(zzseomi@boehringer-ingelheim.com)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제품 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베링거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을은 제품 문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관계자가 위에서 언급 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분히 교육 및 훈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을은 본 계약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취득 및/또는 활용이 있는 경우, 관련된 모든 정보 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개인정보가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보호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함에 따라 갑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및 책임에 대하여 갑을 면책한다.

제11조 납품 및 검사

1. 을은 갑과 합의하여 정한 기일 내에 납품 절차에 따라 계약 내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 보증 및 품질관리

1. **품질 시스템.** 을은 본 계약상의 활동에 적용되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Good Distribution Practice)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GxP 품질관리기준(이하 “GxP”라 한다), 국내 및 국제적인 모든 관련 법령, 규정, 규약 및 가이드라인과 본 계약상의 활동 수행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표문(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 그리고 본 계약상의 활동이 GxP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 문서화, 기록 및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업계 표준에 따라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유지한다.

2. **별도 품질 계약.** 본 계약상의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일반적인 책임 및 업무 관계에 관한 사항,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시스템, 불이행 사항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요구되는 품질 관리 조치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별도 계약에 명시한다.
3. **미준수(Non-Compliance).** 을이 을의 협력업체나 계열회사, 을의 구성원, 직원 또는 본 계약상의 활동과 관련된 을측 관계자가 합의된 표준운영절차(SOP), 갑의 기타 서면 지시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 미준수 사항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정 및 방지 조치(이하 “시정 및 방지”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미준수 사항 및 그 근본 원인(파악된 경우)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정 및 방지 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갑이 승인한 시정 및 방지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시정 및 방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갑의 검토 및 서면 승인이 요구된다. 을은 을의 계열회사, 협력업체 또는 직원의 미준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을이 계약 기간 동안 제공하는 모든 물품, 모든 서비스는 최상의 수준이어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갖추었고 필요한 허가를 득하였으며, 모든 관련 법령, 감독 기관의 지시 및 자율규약 등을 준수함을 보증한다.
5. 갑은 서비스의 결함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 상황에서 알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을에게 이를 통지한다. 갑이 을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한다. 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갑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 비용 없이 결함을 수정하거나 하자 없는 물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다만, 즉시 알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모니터링 및 감사.**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은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자신의 직원 또는 을이 합리적으로 수락할 만한 외부 컨설턴트를 통하여) 을 또는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승인한 협력업체가 수행한 활동을 모니터링 및 감사(이하 갑측 감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갑측 감사는 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i) 본 계약상의 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 및 (ii) 을이 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절차 및 그러한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 감사보고서, 노트, 일정표, 컴퓨터 테이프 또는 수행업무나 그 결과를 문서화한 기타 작업결과물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일체의 자료(임상 자료 및 재무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를 검토 및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7. **통지 기간.** 상황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갑은 모니터링 및/또는 감사 실시 의사를 을 및 경우에 따라 을의 협력업체에 최소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8. **협력.** 을은 모니터링 및/또는 감사 활동에 협력하고, 합리적인 시간 및 장소에서 합리적인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며, 관련 협력업체에도 위와 같이 협력 및 지원을 제공하게 한다. 갑의 모니터링 및/또는 감사가 을을 본 계약상의 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제13조 손해 배상

1. 갑이 을의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위반 등 기타 을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이 서비스 제공 기한을 지체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의약품 판촉; 제품·건강 정보(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정의.** 의약품 판촉”이란 모든 매체(인터넷 포함)를 통하여 을이 마케팅하는 의약품의 처방, 권장, 공급, 투여, 판매 또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전문가들, 소비자들 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을이 수행하거나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의약품 판촉과 관련하여 배포되는 과학적 정보에도 적용된다.
 “제품·건강 정보”란 통신 또는 배포 매체를 불문하고 특정 의약품에 관한 건강 및/또는 질병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단, 규제 관련 서류의 일부로 당국에 제출되거나 개별 환자들을 위한 치료 권장지침의 일부로 사용되는 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법규 준수.** 을은 의약품 판촉 및 제품·건강 정보가 모든 관련 법규(의약품, 광고 및 정보 보호 법률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품·건강 정보와 관련하여 을은 그러한 정보가 (i) 제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즉, 약어 및 색깔 코드와 같은 과학적 브랜딩 사용), (ii)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판촉의 성격을 띠지 아니하며, 치료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3. **검토 및 승인.** 을은 의약품 판촉 또는 제품·건강 정보를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배포하지 아니한다. 의약품 판촉 또는 제품·건강 정보를 외부에 전달 또는 배포하기 전에, 을은 다음을 포함한 해당 의약품 판촉 또는 제품·건강 정보를 전달 또는 배포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갑에게 먼저 제출하여 갑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 ① 판촉 및 과학적 목적
 - ② 목표로 하는 대상
 - ③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과학 문헌
 - ④ 활동 시작일 및 종료일
 - ⑤ 사용/상호작용 빈도
 - ⑥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보건의료기관 등)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갑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4. **교육 의무.** 을은 의약품 판촉 및 제품·건강 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본 항에 따른 을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 및 교육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

1. 을은 을 자신과 그 소유주, 이사, 임원, 직원, 협력업체 및 대리인이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법, 독일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국제 또는 국내의 기타 법규를 포함한

모든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업계실무규약을 준수할 것임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 전술의 일반성을 제한함 없이, 을은 을 및 을의 소유주, 이사, 임원, 직원, 협력업체 및 대리인이 갑의 사업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

- ① (a) 규제 요건, (b) 갑이 당사자이거나 달리 본 계약과 관련된 상거래를 포함한 여하한 사업, 또는 (c)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달성, 취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여하한 형태의 부적절한 이익을 대가로 여하한 공무원, 개인, 실체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뇌물 또는 기타 혜택, 이익이나 기타 유가물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안, 약속 또는 지급하거나 지급 또는 제공을 주선하는 행위;
 - ② 뇌물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이하 “갑측 담당자”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공무원에게 유가물을 제공하는 행위;
 - ③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안, 약정, 지급, 권유하거나 지급을 주선하거나 공무원에게 이를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보상할 목적으로 협력업체, 대리인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유가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품이나 상업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여하한 개인 또는 실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러한 개인 또는 실체에 여하한 대가, 혜택 또는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거나 수령하는 행위.
2.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반 의무 시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협력사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직자 신분의 사람이 있을 시 반드시 BI에게 알려야 한다.
 3. 본 계약의 목적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정부 또는 그 부처, 기관, 정당, 협회나 대행기관의 임직원(정부의 지배를 받은 실체의 임직원 포함), 국제공공단체의 임직원, 그러한 정부, 부처, 기관, 협회나 대행기관 또는 국제공공단체를 대리하여 행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가지거나 정부에 의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는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4. 을은 본 조에 대한 과거, 현재 또는 잠재적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를 갑측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을이 특정 행위가 본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경우, 을은 여하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갑측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결정을 보류한다. “을” 은 이사, 임원, 직원, 하청업자 및 대리인이 적절한 ABAC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을은 을의 이사, 임원, 직원, 하청업자 및 대리인이 적절한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6. 갑이 비용을 부담하고 합리적인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을은 본 계약 조항 및 관련 법률과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갑이 비밀보장 하에 을의 기록을 감사하는데 동의한다. 추가적으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이 제공한 양식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동의한다.
 7. 을이 본 조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위반을 했을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을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그리고/또는 본 계약에 제시되는 다른 제재 외에도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이는 갑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을이 직접 계약한 중개자, 에이전트, 컨설턴트, 계약자, 배급 자 또는 공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외주 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는 을에게 있지만 위반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

8. 을은 갑이 뇌물 수수, 담합 관행 또는 다른 형태의 부패 또는 사기 행위에 관여한 잠재적 파트너들을 향후 계약 및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인정한다.
9. 을은 을 자신과 그 소유주, 이사, 임원, 직원, 협력업체 및 대리인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로부터 갑을 보호해야 한다
10. 갑은 을에게 갑의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 정책에 포함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또는 더 엄격한 수준의 준법관리 시스템과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유지

1.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지득한 갑의 업무상 및 영업상의 기밀 등 모든 내부 문제에 대해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진다.
2.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을의 준법의무

1. 을은 갑과 계약한 서비스를 수행함에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함에 있어, 서비스의 기본목적이 의학적/약학적 지식의 전달과 제품의 우수한 효능 및 안전성을 알리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의료법, 약사법, 공정거래법령, 위 각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관련 법령 및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관련 법령 및 업계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전달 활동이 의료법, 약사법 상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을이 위 관련 법령 및 업계 규약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피해로부터 갑을 면책하고 손해가 없도록 한다.
2.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밖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갑이 위와 같은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사항을 고지 받았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한다.

3. 갑은 을이 고객들에게 의학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 의료법,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 각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관련 법령 및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기타 갑과 계약한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수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 문서의 제공, 내부 감사의 시행,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러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을의 자회사, 계열회사 및 을과 을의 자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대리상,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아래의 행위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 ① (i) 한국 형법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적용 가능한 일체의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에 관한 법령, (ii) 적용 가능한 일체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행위 지원 방지 관련 법령 및 (iii) 갑의 부패방지 및 관련된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위반하는 행위
 - ② 뇌물, 배임수증 또는 뇌물, 직무상의 부당 이득, 급행료의 수락 또는 목인 또는 기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수단을 통한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 부적절한 혜택의 확보, 및 특정 기능 또는 행위의 성과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제의, 약속 또는 제안 및 경제적 이익의 수령 또는 수령 약속 행위. 본 제 12조 제 4 항의 보편성을 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제 12조 제 4 항의 목적 상,
 - (i) “경제적 이익 제공”은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a) 현금 또는 판촉비, 후원비, 연구 및 개발비, 자문료 및 수수료 형태의 지급 또는 상환
 - b) 선물, 향응, 골프 투어, 호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투자 또는 사업 기회, 자산 또는 장비의 사용권, 선불 멤버십 카드, 주택 개조, 비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의 자산 매매,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부여하는 행위, 교통, 채무의 지급 또는 상환과 같은 비현금성 항목의 지급
 - c) 영향력 있는 외부인 또는 그 가족이나 친구(해당 직책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불문)를 고용
 - d)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e) 정당 또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급
 - (ii) “부적절한 혜택의 확보”라 함은 위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의 경쟁업체에게 제공되지 않는 혜택 또는 당사에게만 제공되는 기타 혜택 등 일체의 혜택을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부적절한 혜택”은 상업적인 또는 재무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매매 또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지급
 - b)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허가를 발급하도록 지급금을 제공하는 행위
 - c) 공무원으로 하여금 벌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벌금 또는 세금을 감액하도록 지급금을 제공하는 행위
5. 갑이 을에게 지시 및 요청을 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지시 또는 요청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 을은 베링거인겔하임의 공급자 윤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URL을 통해 참조 할 수 있다.

URL : <https://www.boehringer-ingelheim.com/sustainability/environment-health-and-safety/expectations-towards-our-business-partners>

제18조 권리 의무의 양도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은 본 계약에 따르는 자사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i) 자사의 계열사 및 (ii) 어떠한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자사의 사업부 및/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업 개편, 매각 또는 그 외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1. 갑 또는 을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갑, 을은 즉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어느 일방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받았으나 통지 수령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위반 및 불이행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② 갑 또는 을이 중대한 과실로 어느 일방에게 손해를 입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③ 갑 또는 을이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
 - ④ 갑, 을이 발행하거나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 ⑤ 갑, 을에 대하여 파산, 회생,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갑 또는 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계약서에 별도 합의된 내용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항에 기한 해지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제공한 서비스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갑은 합병, 통합, 재조직, 매각 등에 의하여 자사 사업/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을은 본 계약의 조기 해지에 기인하는 여하한 종류의 피해 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6. 갑은 본 계약 이행에 있어서 을의 청탁금지법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상 조건을 충족한 서비스를 완료하여 갑이 이를 수령하고 승인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간 계약의 경우 갑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3. 개개 조항의 무효화는 나머지 본 계약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경제적 중요도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조항을 가능한 동등한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조 준거법

본 계약에 관한 해석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23조 기타

1. 이 기본계약에 첨부된 개별계약은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을은 을이 고용한 제3자가 본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3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을은 본 계약상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끝-

2016. .

박 기 환
대표이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XXXXXXXXXXXXXX
대표이사
XXXXXXXXXXXXXXXXXX